







WHERE IS **GRACE CHANG?**

멈추고. 보다



COVER STORY

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시행예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FTA NEWS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상품분야)

VOICES FROM THE FIELDS

이순신 제독의 Paradigm Shift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일부 개정 「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판례로 알아보는 상표권 사용료의 가산요건

신한 소식

신한의 새로운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WHERE IS GRACE CHANG?



멈추고. 보다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15 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관세사들의 수습을 위한 면접을 하였습니다. 예년보다 합격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낸 응시자는 50 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추리고 추려 20 여명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안타까워하며 최종 4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초의 목표는 새로운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한 1~2 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로 시작하는 문장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에 대해 얘기할 때입니다. 360°로 펼쳐진 무한 가능의 세상에서 고뇌하며 방황하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한대로 펼쳐져 있던 세상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180°, 90°로 좁아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넓은 세상에서 일부 구간만을 선택하며 집중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360°의 세상에 있으면서도 방황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종횡무진 다니면서도 많은 곳에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면접자리임에도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자부심이 뛰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15 년초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희망의 사자성어는 정본청원(正本淸原)이었습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하여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선정한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상식이 통용되는 맑은 사회를 희망하였으나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어지러운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昏君, 庸君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며 손가락질 합니다.

이번 달에는 KT 융합기술원의 상무이신 백송훈박사의 '이순신 제독의 Paradigm Shift'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ver Story 는 앞서가는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 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내용이며 그 외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및 기타 관세무역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과 내일의 태양은 물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새해 아침이라고 뜨거운 태양이 차갑게 식지 않고 원형의 모양이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正本淸原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昏庸無道의 세상이 된 것이 과연 리더만의 잘못인지? 상식이 통용되는 맑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360°의 세상이 아닌 90°의 좁은 세상만을 바라보며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이기심을

다시 멈추고. 봅니다. 젊은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2016 년 펼쳐나갈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의 내가 옮길 산을 봅니다. 근본이 바로 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산 아래 돌 하나부터 옮기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에, 昏庸無道의 세월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昏君! 庸君! 손가락질하고 개탄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돌 하나를 들어 바른 자리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아갈 새해 2016 년을 벅찬 마음으로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부렸는지 돌아봅니다.

전한관세법인 장승희 Seydur Chry







수출입 통관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 내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

2016년에는 한·중FTA 발효를 비롯한 관세행정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의 시행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327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종망이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및 물류 관련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약 20년이 지나노후화된 현 3세대 국종망 시스템의 교체와 물동량의 막대한 증대, FTA/AEO 등을 비롯한 변화하는무역환경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4세대 국종망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 1월부터 3단계의시험운영을 거쳐 4월16일 4세대 국종망 오픈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사용자 편의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 ③ 고성능,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의 제공을 공개하였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재의 유니패스를 대폭 개편한 대민포털시스템

(가칭 MYC) 개발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별 맞춤형 메뉴 및 화면구성, 업무처리현황 일괄조회, 인증기반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신고 편의 기능 향상과 기존의 법령정보만이 아닌 질의 회신, 통칙, 협정, 판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의 추가제공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행정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출입 임시개청 신청,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이사화물 통관신청 등이 휴대폰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 사용자 편의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FTA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수출통관과 원산지 증명서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고 세관-상공회의소간 원산지증명서 신청양식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후 업무포털을 통한 유통이 구현될 것으로 보여 원산지관리업무에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업무포털 내에 전자납부서비스가 구축되어 대민포털시스템을 통해 납부내역 조회, 제세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3. 고성능,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접근통제체계 적용 등 개인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 국내외 기술 표준 적용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버증설, 다중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급을 다투는 수출입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바와 같이 4세대 국종망은 신속통관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방면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외에 수출입 기업들이 주의하여야 할 변경 사항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화주 /신고인에게 미리 통지하던 수출 적재전검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선적전 적재지에서 물품검사가 이루어질수 있으며(추후 확정 예정), 기존 수입통관시 단순건별 관리를 통한 검사 진행에서 공급망+거래형태별 관리로 관리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시 HS CODE를 중심으로 한 수출입신고서의 '란' 기준으로진행하던 것을 '규격'단위 기준으로 끌어내렸으며수출입신고서에 이에 대한 '제품번호'와 '부품번호'를기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ERP단위의 관리체계를 수출입신고시에 적용하도록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4 세대 국종망시행으로 이제까지 예시한 변화 외에도 수출입/환급/물류 분야 전반에 걸쳐 상당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국종망은 수출입통관 및 물류에 관련된 종합 정보서비스로서 이는우리나라 수출입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있으며 특히 내부 ERP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하는법인단위 신고자 또는 별도의 통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하는 신고대행자 등은 이러한변동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변화하는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





FTA NewS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정(삿풋분야)

TPP 의의

2010년 3월에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협상이 지난 10월 5일 미국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타결되었다. TPP는 관세철폐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투자, 정부조달 등과 관련된 규범 등폭넓은 분야에서 경제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참가국들이모두 최종 법안에 서명할 경우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규모의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 및 학계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총선 대선 등 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경우 TPP 발효시기가 2017 년 안팎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현실적으로 '1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정부 및 기업들은 그동안 신중히 이해득실을 따져 TPP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TPP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상품분야)

TPP 주요 특징은 3 가지다. 첫째 역내 생산 재료와 공정에 대한 원산지 누적 허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 형성을 촉진하는 것, 둘째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국영기업을 규제하는 것, 셋째 환경 분야에서 생물 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국제 이슈를 반영한 점 등이다. 이하에서는 첫 번째 특징인 상품분야에 있어서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고자한다.

- 관세자유화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협정문 분석보고에 따르면, 상품양허는 관세가 발효 즉시부터



최장 30 년에 걸쳐 낮아지면서 관세철폐율(품목수기준)이 95~100%였다. 자유화 수준을 국가별로보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8 개국이 100%였으며 페루, 캐나다, 멕시코가99%, 일본은 95%였다.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나머지 10 개국과는 이미 양자 혹은 다자(아세안) FTA 를 체결했기 때문에 공산품의 경우 당분간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 에서미국이 일본에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비율이67.4%(이하 수입액 기준)인데 비해 한·미 FTA 는TPP 가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는 2017 년 1 월 1 일부터 미국의 관세 약 95.8%가 무세화 된다. 한·호주FTA 도 2017 년 96.7%, 한·캐나다는 95.9%의 공산품관세가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TPP 참여국가 중 10개 국과 FTA 를 체결하고 있어 TPP 참여로 인한 관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규범 개선·누적 원산지규정 등 비관세 측면의 중요성이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 원산지 완전 누적기준 도입

TPP 협정문에는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무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규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원부 자재 조달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어 역내 서플라이체인(Regional supply chain)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즉 TPP 회원국 영토 내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을 총 체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이 원산지인 재료나 공정 을 최종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산지 완전누적 기준은 FTA 원산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들이 역내에서 일어난 부가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추적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누적조항을 활용하려면 원산지관리시스 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라면, 현재 FTA-PASS, FTA-KOREA 와 같은 무료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부자재 조달 전략, 즉 어떤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얼마나 조달하는 것이 원산지 판정에 유리한 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기존 FTA 와 TPP 와의 관세혜택의 차이분석과 활용 필요성, 활용프로세스 구축 등, 그 적용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과 개별기업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이 순신 제독의 Paradīgm Shīft

이순신 제독과 이순신 장군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무심코 "이순신 장군"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가 선배 장교에게 치도곤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이순신 제독"이라고 호칭하여야 진정한 해군 장교라는 지적이었다. 오늘 날, 해군에서는 장성 계급을 육군 또는 공군의 장군이라는 호칭 대신에 제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시대에는 육군과 수군(수군)의 구별 없이 장군이라고 불렀다.

이 일을 계기로 군 복무시절에 부대 내의 도서관을 틈만 나면 들락날락하면서 이순신 제독에 관한 자료들을 섭렵하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전쟁역사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다.

지금의 50 대들은 기억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 내고 학교마다 세워진 동상에 꽃을 바치고는 하였다. 이런 행위는 당시 집권자의 "충무공 영웅 만들기"를 위한 관제행위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제독의 전략적 사고와 영웅적 행동이 폄하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 왕조 500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두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제독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반도 5 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고 해도 위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이 두 위인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주장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병접전(短兵接戰)에서 원거리 함포 포격전으로 전 환

경영학에서는 2 등, 또는 3 등 사업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게임의 물을 바꾸라고 한다. 이는 고착화된 시장 구조에서 기존의 경쟁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1위 사업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 제독의 paradigm shift 는 해상 전투를 기존의 단병접전에서 포격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전투함을 상대방의 함선에 접근시킨 후에 도선하여 갑판에서 칼을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것은 왜군 수군이 가장 잘하는 전법이었다. 월등한 수적 우위의 함선과 빠른 기동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전법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순신 제독은 이러한 전법으로 맞붙을 경우 승산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해상 전투의 룰을 바꾼 것이다. 조선 수군의 함선 구조를 이층 구조로 하여 왜군 수군이 쉽게 도선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접근 조차 할 수 없도록 먼 거리에서 함포사격을 하는 방법으로 전투의 룰을 바꾸었다. 2014 년도 개봉하여 큰 인기를 모았던 영화 "명량"을 보면 왜군이 우리 수군의 판옥선으로 넘어와서 백병 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전투의 박진감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순신의 이러한 포격전 전략은 이후 각 나라에서 도입되어 1941 년 태평양전쟁에서 해상전투의 양상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전력의 싸움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약 350 년간 이어진다.

Paradigm Shift 결과

이렇게 게임의 룰을 바꾼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명량해전에서는 왜군이 3 천~4 천명의 사상자가 나온 반면, 조선 수군은 사망자 2 명, 부상자 2 명이라고 난중일기는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 제독의 마지막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는 왜군이 약 2 만여명 사망, 조선 수군은 약 500 여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이다.

이외에도 당항포해전이나 웅포해전에서는 왜군의 사상자가 수 천에 달하고 있지만, 조선 수군은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는 전투도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쳐 7 년간의 전쟁 중, 이순신 제독이 출전한 전투에서 격침된 왜군의 함선은 1,200 여척이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없다. 양측의 사상자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집계할 수 는 없지만 왜군은 약 3 만~4 만, 조선수군은 약 700 여명 정도라 한다.

아마도 인류가 전쟁을 시작했던 이래 이처럼 압도적 인 승리를 이룬 전쟁은 없을 것이다.

단병접전의 해상 전투 형태를 함포를 이용한 원거리 포격전으로 전환한 것은 "컬럼부스의 달걀" 처럼 지 금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너무도 간단하고 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발상 이 아주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특히 수출드라 이브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리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프트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큰 고민이다.

KT 융합기술원

상무 백 송 훈 (sh.baik@kt.com)



관세무역관건법경 변경 소식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 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 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 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 (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 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 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

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 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 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자: 2016년 1월 1일 (다만, 제116조의2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s Opinions≫

관세법에서는 '무신고'건에 대하여 밀수죄(벌금형 또는 징역형)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밀수 적발에도 요건 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자, 동 개정에 무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무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 경우 40%)가 부과됨으로 보다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 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 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 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 50조의2 신설).

(2) 전자적 용역 과세범위 명확화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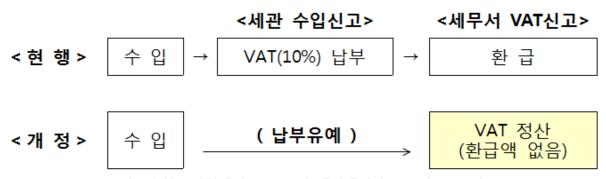
- **3. 시행일자**: 2016년 1월 1일 (다만, 제53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50조의2 신설)는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1(요약본)_2015.8.6.]

≪신한's Opinions≫

부가가치세법 상 가장 눈여겨 볼 만한 개정 사항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입니다. 해당 신설 규정은 사전 신청 업체에 한하여 2016년 7월 1일 수입신고부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소 40일 이상 유예하여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미정으로, 추후 시행 령에 반영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판례로 알아보는 상표권 사용료의 가산요건 (국심 2002 관 0091)



I.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본사로부터 본사 상표가 표기된 화장품용기를 수입하고 국내 제조자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은 화장품 국내 판매가격의 8%를 미국본사에 라이 선스료로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인 지급한 라이선스료가 미국본사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용기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 하여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田. 청구법인의 주장

1. 관련성 충족여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의 제조 및 판매활동을 위한 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미국본사에 라이선스료를 지급한 것으로 <u>화장품용기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고</u>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거래조건성 충족여부

화장품용기는 제조에 있어 미국본사의 특별한 기술 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조가 가능 <u>하며</u> 청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미국본사에서 공급한 것으로서 <u>제 3 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므로</u> <u>라이선스료는 화장품용기(재정물품) 수입에 따른</u>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처분청의 주장

1. 관련성 충족여부

청구법인과 미국본사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르면 계약제품의 제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u>상호·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하는 대가로서 라이선스료가 지급</u>되며, 미국본사의 상표가부착된 화장품용기는 관세법 시행령 제 19 조제 3항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거래조건성 충족여부

화장품용기 자체는 누구나 제조, 판매할 수 있을 지라도 <u>기술제공자의 상표가 부착된 용기는 상표</u> 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제품의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이권이 기술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표사용에 대해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동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을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IV.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 19 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 2 항) 법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 는 금액으로 한다.

(제 3 항)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 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 5 항)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u>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u>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V. 판결

청구법인이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계약에 의해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화장품 제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기술과 상표권 사용을 허여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 19 조제 3 항, 제 5 항에 규정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 라이선스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VI. 추가 견해.

상표사용이 허여된 상표권 부착하여 수입하는 화장 품용기(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 19 조제 3 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의한 상표의 사용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표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상표의 사용 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u>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u>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신한의 새로운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 년 신한관세법인 수습관세사 공개 채용'이 열렸습니다.

금년도 관세사 시험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50 여 명의 32 기 관세사들이 신한관세법인에 지원을 하였고, 그중, 신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갈 4 명의 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신한과 새 출발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김 다 예 수습관세사



김 은 지 수습관세사



윤 영 수 수습관세사



전 형 재 수습관세사

ABOUT WRITERS

COVER STORY –

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 망의 시행예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이 동 헌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수출입 통관 대행
- 관세환급, 소요량관리
- FTA 원산지관리

FTA News-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상품분야)



권 선 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고객관리본부 C/S 팀
- 前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컨설팅 전문
- 무역관련 법률자문
- FTA 원산지관리
 AEO 경력 다수

Voices From The Fields-

이순신 제독의 Paradigm Shift



백 송 훈 상무 (<u>sh.baik@kt.com</u>)

PROFILE

- KT 융합기술원 IoT 기술담당 상무
- 공학박사 / MBA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인천경기지사 (수출입통관/ 환급)
- FTA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⑩ 판례로 알아보는 상표권 사용료의 가산요건



최 성 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법인심사, 종합심사 컨설팅
- AEO 인증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컨설팅



